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9일, 강득구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9.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2차 교육위원회(2024.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득구의원)

현행법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책 수립·시행 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안교육기관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 소외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대안교육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으며, 국가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과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방

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대안교육기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강득구 의원,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서지영, 정성국 위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재정 지원 측면에서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필요가 있으나,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과도하게 높은 학비와 일반 국민들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운영비 지원 조항 신설은 다소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음.